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19재나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7 자 2019재나29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314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3066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소송구조)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망 B의 소송수계인

1. L

2. M

3. N

4. O

5. P

6. Q

망 C의 소송수계인 망 G의 소송수계인

7. U

변론 종결2021. 6. 11.

판결 선고2021. 8. 27.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30662 판결

재심대상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3149 판결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5. 6.부터 재심대상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원고 등의 관련 소송 경과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등의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그 처이었던 D 명의로 1997년경부터 망 B, 망 C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왔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D은 1998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망 B, 망 C, Y과 보증금 등에 관한 여러 소송을 하였다.

2) D은 망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9920호로 5,6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차 보증금사건'이라고 한다).

3) D은 위 제1차 보증금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고, 이에 망 B은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가단4186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는 2002. 1. 31. "망 B은 2002. 2. 28.까지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제1차 보증금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조정사건'이라고 한다).2) 4) 원고는 망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44699호로 잔여보증금 등 2,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9나2966호로 망 C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9. 12. 15. 확정되었다(이하 '화해권고사건'이라고 한다).3) 5) 이후 원고는 망 B과 망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4828호로 6,2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망 B은 600만 원, 망 C은 망 B과 연대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같은 법원 2013나14072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차 보증금사건'이라고 한다).

6) 원고가 위 제2차 보증금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망 B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2214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망 B이 제2차 보증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리금을 모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한편 D이 조정사건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망 B은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885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무변론)을 선고받았고, D이 같은 법원 2015나34213호로 항소하였으나, 조정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D은 F 및 망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0811호로 7,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이 같은 법원 2020나215651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망 B, 망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0662호로 '① 원고 또는 D은 관련소송 경과에 따른 보증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② 조정사건의 조정조서는 허위·조작된 것인바, 망 B, 망 C은 허위 또는 조작된 조정조서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314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대법원 2018다4316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2. 27. 자로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9. 1. 1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또는 D은 망 B, 망 C으로부터 조정사건의 청구원인에서 언급된 2,600만 원, 조정조서에 따른 1,300만 원 또는 보증금 5,600만 원 등을 변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망 B, 망 C이 62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 및 D은 조정조서에 따라 보증금 중 5,6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허위 또는 조작된 조정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01가단41862호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조정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또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및 D은 조정사건과 화해권고사건에서 언급된 2,600만 원, 1,300만 원,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조정사건의 조서는 허위이고 조작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원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가단32호로 조정사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D이 이에 같은 법원 2013나3765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정조서가 허위·조작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 B은 조정사건 본안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총 보증금 6,200만 원 중 2,6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3,6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망 B은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인 2001. 10. 22. D을 피공탁자로 하여 3,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1금3623호), D은 2001. 10. 26.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지급이 완결되었는바(갑 제8호증의 2), 조정사건에서 망 B이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에서 원고 측이 망 B이 변제하였다는 2,600만 원을 다투자 그 절반 상당액인 1,300만 원으로 조정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조정사건을 거쳐 그에 앞선 제1차 보증금사건의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어느 모로 보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지현

판사이일엽

판사신상렬

- 1) ① 재심대상소송 제1심 피고 망 B은 2017. 4.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L, M, N, O, P, Q은 재심대상소송 제2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② 한편 재심대상소송 제1심 피고 망 C은 2017.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G, R, S, T은 재심대상소송 제2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R, S, T은 2017. 9. 1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756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G는 2019. 5.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V, W, X과 피고 U이 있었는데, 2019. 7. 2.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402호로 V, W, X은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U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각 하여 2019. 9. 30. 위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③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21. 4. 29. 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택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 2)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가단32호로 조정사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D이 이에 같은 법원 2013나3765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재가단25호로 화해권고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